

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

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의 합계가 총점 75점 이상인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한다. 다만, 제1호,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, 다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1개 이하여야 한다.

| 평가 항목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수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. 품질관리       | 가. 별도의 품질관리표준(작업방법·조건과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)이 수립되어 있고, 수립된 품질관리표준에 따라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  |
|               | 나. 별도의 품질관리표준(작업방법·조건과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)이 수립되어 있으나 품질관리표준과 상이하게 작업하거나 다소 미흡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|
|               | 다. 품질관리표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 작업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2. 시설·장비의 현대화 | 가.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·장비의 평균 사용연한이 5년 미만이며, 시설·장비의 관리 상태가 적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  |
|               | 나.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·장비의 평균 사용연한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며, 시설·장비의 관리 상태가 적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| 다.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·장비의 평균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이거나, 시설·장비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30 |
| 3. 기술의 연구·개발  | 가. 최근 3년간 석재 또는 석재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제품(이하 "석재제품"이라 한다)의 연평균 매출액의 3퍼센트 이상을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·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| 20  |
|               | 나. 최근 3년간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연평균 매출액의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을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·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|
|               | 다. 최근 3년간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연평균 매출액의 1퍼센트 미만을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·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4. 기술의 특허 보유 | 가.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 기술에 대한 특허를 2건 이상 보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|
|              | 나.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 기술에 대한 특허를 1건 보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| 다.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
| 5. 전문인력의 확보  | 가.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|
|              | 나.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1명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| 다.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
| 6. 법령준수      | 이 법 또는 「골재채취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br>가.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<br>나. 징역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<br>다.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| -30 |